

은평권역공영차고지본운영계획안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586
----------	-----

2000년 5월 일
교 통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0년 4월 12일,
서울특별시장 제
출

나. 회부일자 : 2000년 4월 17일

다. 상정일자

- 제11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5차
교통위원회
(2000년 5월 1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 : 교통관리실장 차동득)

가. 제안이유

- 시내버스차고지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
여 추진중인 10개 권역의 공영차고지
조성 공사중 은평권역 공영차고지가 6
월말 완공 예정임에 따라 은평권역 차
고지 및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·관리
를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서울특
별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코자 하는 것
임.

나. 주요내용

- 은평권역 공영차고지 및 시설물을 효율
적으로 운영·관리하기 위하여 은평권역
내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시내버스업체
등에 시설물의 사용허가 및 취소, 사용료
의 부과·징수, 행위제한, 시설물의 관리
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
주차장 및 각종 시설물 등을 전문적으로
관리하는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에 위
탁코자 함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김태호)

- 은평권역 공영차고지의 운영 및 관리에
관한 기본계획인 “서울특별시 공영차고
지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”이 지난
회기에 의회에 접수·계류중에 있으며
- 새로 접수된 계획안 근거규정으로 “서울
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”
제18조제2항에 근거하여 의회에 의결을
얻고자 하나, 본조례 규정은 대행사업에
관한 것으로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시행령

(제63조)에서 “공사·공단은 국가 또는
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고자 하는
때에는 위탁계약에 의한다” “특히 필요
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
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
시행하게 할 수 있다”고 규정하고 있을
뿐

- 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18조
처럼 대행사업을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
것이 아닌 경우에도 시장의 승인을 얻게
하거나, “시장이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
는 의회의 의결”을 받도록 하고 있는 규
정은 지방자치법과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
시행령과 맞지 않으며
- 서울시 산하의 여타 공사·공단 설치조례
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으며 본 계획안은
의회의 의결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함.
- 한편, 시설관리공단의 담당부서에서도 본조
례 제18조의 개정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
나, 조례개정안의 발의권이 없어서 그 동안
개정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이 있었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- 생략
- 5. 토론요지
- 없음
- 6. 소위원회
- 미구성
- 7. 심사결과
- 원안가결
- 8. 소수의견의 요지
- 없음
- 9. 기타 필요한 사항
- 없음

은평권역 공영차고 기본운영계획

우리시 대중교통정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10
개 권역의 공영차고지 조성 공사중 은평권역의
공영차고지 조성공사가 6월말 완공예정임에 따
라 동 차고지 및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관
리하기 위하여 주차장 및 각종 시설물 등을 전
문적으로 관리하는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에
위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은평권역 공영차
고 기본 운영계획을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
립및운영에관한조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